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57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조인철·정진욱·한정애

박민규 • 박해철 • 신정훈

안도걸 • 박용갑 • 양부남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警衛)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 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 청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라 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며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 등의 국회 출 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행정부 소속 경찰이 입법부 보안에 관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 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4조의2(국회경찰) ①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둔다.
 - ② 국회경찰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국회경찰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7급 이상의 국회경찰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국회경찰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국회경찰의 조직, 업무 지역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계엄법」 등 다른 법 령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144조의2(국회경찰) ①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 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 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 경찰을 둔다. ② 국회경찰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경찰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 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 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한 다. ④ 7급 이상의 국회경찰은 사 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 급 이하의 국회경찰은 사법경 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 행한다. ⑤ 국회경찰의 조직, 업무 지역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⑥ 제2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계엄법」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